

2023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3. 1. 2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율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노+경+일) x 율	(직접공사비) x 율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· 소방·기타		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5	12.5	7.8	7.8	5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4	12.4	7.7	7.7												건축공사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5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
	13~36개월 (1095일)	12.1	12.1	8.1	8.1														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8	11.8	7.7	7.7	5억 - 30억 미만	5.5	15.0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5억 ~ 50억 미만	철도·궤도신설공사	2.45	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7.5	7.5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5,349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3	11.3	7.9	7.9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5,499							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6	11.6	7.5	7.5	50억 - 100억 미만	5.5	12.0		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0.16					50억 이상	중건설공사	2.35	5,400				
	7~12개월 (365일)	11.5	11.5	7.3	7.3								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57	4,411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2	11.2	7.7	7.7												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20	3,250	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2	11.2	7.6	7.6	300억 - 1000억 미만	5.0	10.0			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	0.10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1	11.1	7.4	7.4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0.8	10.8	7.8	7.8									중건설공사	2.44									
36개월 초과 (1096일)	10.1	10.1	7.4	7.4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66															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관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						1000억 이상	4.5	9.0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					
[산재보험료]						[환경보전비]	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		
(노) x 3.7						(직접공사비) x 율		(직접공사비) x 율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중건설공사	2.44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1-95호(2021. 12. 29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구분		요율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66						
[고용보험료]				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0.9		50억 미만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(노) x 율		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0.4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				지하철		0.5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[1등급] 1200억 이상						철도		1.5		300억 이상 총심·총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[2등급] 1200억 미만 ~ 950억 이상				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0.5		300억 이상 총심·총평제(건축)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[3등급] 950억 미만 ~ 550억 이상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	1.8		터키·대만공사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[4등급] 550억 미만 ~ 400억 이상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	0.8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[5등급] 400억 미만 ~ 220억 이상						댐		1.1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[6등급] 220억 미만 ~ 130억 이상						택지개발		0.6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[7등급] 130억 미만 ~ 81억(고시금액) 이상		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0.8		70억 미만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7등급 미만				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0.7		70억이상~120억미만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19-244호, 2018.12.18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주택(신축)		0.3		[직공비]x0.0141%]x공기(년)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[건강보험료]						주택 외 건축		0.5		120억이상~250억미만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				1.81				
(직노) x 3.545		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0.3		250억이상~500억미만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수수로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				
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		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·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[직공비]x0.0141%]x공기(년)		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[연금보험료]				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		[1백만원+(직공비-75억)x0.0102%]x공기(년)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				
(직노) x 3.545						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[1.5백만원+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		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				[2.4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[4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				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
						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단입찰, 밀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81										

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

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

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

* 건설업의 분류

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·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

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

- [중건설공사] 고제방(댐)높이20m이상의 제방, 방파제, 안벽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들) 신설공사

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, 과선교, 송전선로

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지 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

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

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 고시 제2020-63호, 2020.1.23.)

□ 추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.이전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

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

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

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